

승선정원 명

승객 준수사항

낙시관리 및 육성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승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승객은 승선할 낙시어선이 낙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 인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낙시어선에 승선할 때에는 안전운항을 위하여 낙시어선업자 (선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가. 낙시어선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 나. 낙시어선업자(선원)의 구명동의 착용 지시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 다.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 라. 영업시간외 항해, 영업구역 외 지역의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 마. 인명구조장비나 기타낙시어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 바.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무단취사, 야생 동식물 등을 반출하는 행위
 - 사. 낙시도구나 미끼를 낙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 아. 시제한기준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 1, 2)를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
3. 기상악화 등으로 안전대피 또는 철수를 위하여 낙시어선업자의 승선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하며, 또한 영업금지구역에 하선을 요구 하여서는 안된다.
4.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5.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한 포획·채취금지 체장(체중) 이하의 수산생물은 포획·채취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